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0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설치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## 4.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- 가. 기금사업의 목표 :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나.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  
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이자부담 완화  
맞춤형 융자지원 및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

## 5.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

### 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4년도 말 조성액 <sup>㉠</sup>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 말 조성액 <sup>㉡</sup> = <sup>㉠</sup> + <sup>㉢</sup>	비고
		수입 <sup>㉢</sup>	지출 <sup>㉣</sup>	증감 <sup>㉤</sup> = <sup>㉢</sup> - <sup>㉣</sup>		
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3,807,538	3,896,000	5,000,560	-1,104,560	2,702,978	

### 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5년도 말 조성액 <sup>㉠</sup>	용자금 미회수 채권 <sup>㉢</sup>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<sup>㉣</sup>	총 조성규모 <sup>㉤</sup> = <sup>㉠</sup> + <sup>㉢</sup> - <sup>㉣</sup>
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2,702,978	13,291,760	0	15,994,738

### 다. 자금 운용 계획

#### 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3,896,000	3,644,820	251,180
용자금 회수	3,700,000	3,460,000	240,000
용자금 회수 이자수입	56,000	54,000	2,000
공공예금 이자수입	140,000	130,820	9,180

#### 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5,000,560	5,002,560	-2,000
심의위원회 수당	560	560	0
시중은행협력 이차보전	0	2,000	-2,000
민간용자금	5,000,000	5,000,000	0

## 6. 검토의견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, 재원은 전입금, 이월금,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됨.

-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### (수입내역은)

공공예금 이자수입 140,000천원,

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6,000천원

민간융자금 회수 3,700,000천원

총 3,896,000천원이며,

### (지출내역은)

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

민간융자금 5,000,000천원

총 5,000,560천원임.

- 본 기금은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**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

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2. 29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15호, 2023. 12. 29.,  
일부개정]

### 제3조(기금의 설치)

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의 육성·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개정 2011.10.27, 2020.12.31>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**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7.18.] <개정 2020.12.31>

### 제4조(기금의 자원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금천구”라 한다)의 일반회계 전입금<개정 2016.7.18, 2020.12.31>
2.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상환 원리금 중 금천구 이체기금<개정 2020.12.31>
3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4.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<신설 2016.7.18.>
5. 그 밖의 수익금

[중전 제4호에서 이동 <2016.7.18.>]

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### **제5조(기금의 용도)**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<개정 2020.12.31>
2.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<신설 2011.10.27>
3.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<신설 2016.7.18.><개정 2020.12.31>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[중전 제3호에서 이동 <2016.7.18.>]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<개정 2016.7.18>